

[별표 3]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구분	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기준	
		참여제한	지원금 환수
부정수급	☐ 부정한 방법(타기관 중복수혜 등)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	3년	전액 환수
중단 · 실패	☐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, 실패한 경우	3년	전액 환수
	☐ 지원기업 부도, 폐업, 대표자 사망 등 중단,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	면제	집행잔액 환수
	☐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	2년	전액 환수
포기	☐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○ 관련 증빙 제출 필요	면제	전액 환수
	☐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	경고	전액 환수
사업비 집행	☐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, 내규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○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	주의	해당없음
	☐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	경고	해당금액 환수
	☐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	경고	해당금액 환수
협약 위배	☐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·보고한 경우	3년	전액 환수
	☐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	2년	해당금액 환수
	☐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,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	경고	해당 없음
	☐ 진흥원 승인(통보)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○ 중간점검, 완료평가 결과(물)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	경고	해당없음 (필요시환수)

*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*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

* 경고 2회 = 참여제한 1년, * 주의 2회 = 경고 1회

※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

*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

*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

* 지원금 횡령, 편취, 유용한 경우, 「공공재정환수법」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

* 제재 및 환수 사유가 **확인된 시점에**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,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